

동두천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-11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9. .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동두천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」의 근거조항을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3항을 제4조의2로 개정(안 제1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동두천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”를 “동두천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

제1조 중 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의2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총 무 과
입 안	실 · 과장 직위·성명	총무과장 장 위 순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시정팀장 정 우 상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주무관 박정호 860-2122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<u>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</u> 동두천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제4조제2에</u> ----- <u>제4</u> <u>따라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